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



판단기준 법리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여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

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
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
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O의 임원인 피고인이 재직 중 위와 같이 O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까지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보안서약서 등에 위배된 행위로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영업파일들의 반출 및 퇴사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일부가 O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이 O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위 일부 영업파일들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까지 이를 계속 보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이 O의 임원으로서 그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

영업비밀, 기술유출, 경업금지, 전직금지, 민형사소송, 다수사건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